

목회 관계 해소 동의서 (사례비 지급 연장 포함)

_____ 목사(교역장로)와
_____ (도시) 소재 _____ 장로교회.

본 목회관계 해소 동의서는 _____ 목사(교역장로)와 _____ 장로교회 간
_____ (연/월/일)에 맺어진 청빙계약서 및 계약서의 모든 추가 개정안을
_____ (연/월/일)부터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본 동의서는 새언약 노회(Presbytery of New Covenant)의 목회 위원회 (Committee on Ministry)가 승인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양측은 위 목회자가, 본 동의서에 별도로 명기된 사항 외에, 청빙계약서에 명시된 어떤 위치나 권한도 교회 내에서 가질 수 없음을 동의한다.

_____ 목사(교역장로)는 _____ (연/월/일)부로
_____ 장로교회에서 더 이상 사역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

위에 명시된 일자부터 _____ 목사는 쌍방의 동의에 따라 회중의 전임(former) 목회자로 남게 된다. 더불어 목사와 회중은 새언약 노회의 “관계 해소에 관한 윤리적 원칙” (Separation Ethics Policy)을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 위 일자부터 위 목사는 어떠한 형태의 목회 활동이나 목회에 관한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목회 관계 해소 조건

_____ 목사는 목회 관계 해소 동의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작하여
_____ (연/월/일)까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례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 | |
|--|----------|
| 1. 월급 및 주거비 보조 연장 (less ordinary deductions) | \$ _____ |
| 2. 총회 연금이사회(Board of Pension)에서 받는 급부금 | \$ _____ |
| 3. 공유 자산 계약의 지속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 _____ |
| 4. 지출되지 않는 연간 휴가비 보상 | \$ _____ |
| 5. 제 3 자에게 예탁되었으나 사용되지 않는 연장교육비* | \$ _____ |
| 6. 사회보장비 지급 연장 (Social Security Allowance) | \$ _____ |
| 7. 목사가 교회에 갚고 있는 대출금 혹은 완급액 | \$ _____ |
| 8. 사택 사용은 _____ (연/월/일)까지 허용하며 _____ (연/월/일)까지 사택을 비울 것임. | |
| 9. _____ 목사가 교회에서 월급 및 기타 혜택(급부)을 받고 있는 동안 _____ 목사는 교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10. 이사 비용으로 제 3 자에게 기탁된 금액 \$ _____

11. _____ 목사는 _____ (연/월/일)까지 교회의 모든 시설에 보관 중인 개인 소지품을 제거하고, 소지한 모든 열쇠를 반납할 것임.

* 지급되지 않고 축적된 연장 교육비(Professional Development Funds)은 노회에 기탁되어야 하며 다음에 청빙되는 목사에게 지급이 가능해야 함. 사용하지 않는 연장 교육의 기회(시간)에 대해 교회가 연장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한 사실이 없을 경우 교회는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지 않음.

목회 관계를 해소하고 위 교회를 떠나는 목회자가 다른 목회지에서 전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거나 일반 직장(전임)을 구했지만 월급이 위 보상 기준에 미달할 경우 _____ 장로교회는 위에 명기된 보상 기준과 새 직장에서 받는 월급 사이의 차액에 대한 지불 의무를 가짐. "고용"이라 함은, 이에 관해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일반 직장이나 목회 사역 간 차이가 없음.

그러나 위 목사가 일반 직장 혹은 목회 사역에 상관없이 전임 직장을 구했고 월급이 본 동의서보다 많을 경우 _____ 장로교회는 본 동의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상 조건을 이행할 의무를 갖지 않게 됨.

위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위에 언급된 (1-9 번 항목) 바, _____ 목사에게 _____ 장로 교회가 동의한 모든 보상 약속은 _____ (연/월/일)에 만기됨 (효력이 상실됨).

이사 비용 지급 의무는 _____ (연/월/일)에 만기됨 (효력 상실).

본 목회 관계 동의서는 두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해석은 텍사스 주법에 근거함. 본 동의서에 대한 변경은 새언약 노회 목회위원회를 포함한 동의의 모든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만 가능함.

위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며 동의하며, 모든 동의의 당사자는 아래와 같이 서명함.

1. 목 사: _____ 서명일: _____ (연/월/일)

2. 당회 서기: _____ 서명일: _____ (연/월/일)

_____ (도시) 소재 _____ 장로교회를 대표하여 서명함.

3. 새언약 노회 대표: _____ 서명일: _____ (연/월/일)

목회위원회 위원장 혹은 노회 서기